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637호로 2025년 11월 7일 이규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안 제5조)
- 다. 금융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 라.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11.7.~11.13.)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   | 제 명               | 내 용   |
|-----|-------------------|---|
| 제1조 | 목적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주민 보호, 피해 예방 추진을 위함   |
| 제2조 | 정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를 따름   |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   |
| 제4조 | 구민의 책무            |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
| 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 <b>피해 방지 지원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홍보</li><li>- 피해 예방 교육 사업</li><li>-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li><li>- 민·관 협력 사업 등</li></ul> |
| 제6조 | 금융기관과의 협력         |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 가능  |
| 제7조 | 사업비 보조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따름</li></ul>   |
| 제8조 | 표창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 인정 시 표창 가능  |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의 목록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가능 규정, 사업비 보조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저한 공로 인정 시 표창 가능함을 규정함.

## ○ 검토 결과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 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sup>1)</sup>, 스미싱<sup>2)</sup>, 파밍<sup>3)</sup>, 몸캠피싱<sup>4)</sup>, 대출사기<sup>5)</sup> 등의 형태를 띠는 범죄 행위임.
-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들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지난달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sup>6)</sup>

1)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

2)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SMS) 내 인터넷 주소(링크) 클릭하게 하여 →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 →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당하는 범죄

3)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위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탈취하는 범죄

4) 스마트폰 채팅 어플 또는 웨็บ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5)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범죄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대출상담 또는 대출 알선을 미끼(불법 스팸문자 발송)로 접근한 후, 신용등급 조정, 대출 수수료,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면 편취하는 범죄

하여 금융·통신 분야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수사를 아우르는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에 대한 정부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책임,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11.9.30.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sup>7)</sup>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 복지 사업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안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신,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가 있음.

6)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2025.10.15.)

7)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참 고 자 료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 · 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